



법무법인 바른, 선출직 공무원 재판 7전7승

법무법인 바른은 김양호 삼척시장이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등 최근 바른이 변호한 선출직 공무원 재판에서 7전7승을 거뒀다고 밝혔다.

바른이 지난해 4월부터 변호한 선출직 공무원은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주원 전 안산시장,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 이병선 속초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 삼척시장 등이다.

이 중 이 의원과 윤 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80만원, 7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전 시장이 골재채취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윤 전 의원이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둘 다 대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났다. 이 시장의 정치자금 수수혐의는 서울고법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시장직 유지)됐고, 안 시장의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도 시행은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바른 관계자는 잇따른 선거사건 승소사례 배경에 대해 “법정 경험이 풍부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전면 배치해 직접 실무를 챙기고 있고, 송무지원 경력 10년 이상의 사무진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객서비스는 철도유통 소관” 코레일 정규직 요구한 여승무원, 대법서 패소



정인진 변호사
T. 02-3479-7555
E. kaydad@barunlaw.com

KTX여승무원 공채 1기인 오모씨는 지난 2004년 3월 KTX 개통 당시 KTX 고객센터 업무 를 위탁한 흥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흥익회는 같은 해 12월 오씨를 비롯해 승무원들의 고용 계약을 한국철도유통(흥익회에서 유통부분이 분리된 코레일 자회사)에 인계했다.

2006년 한국철도유통이 다시 오씨 등의 근로계약을 계열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 개발)로 넘기려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오씨 등이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근로계약은 한국철도유통과 맺었지만 사실상 업무결정권 등을 행사한 것은 코레일이므로 우리는 철도공사 소속 직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끝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단식농성과 서울역 뒤편 40m 높이의 조명 철탑 고공농성 등을 벌인 오씨 등 승무원 34명은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200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들을 고용한 한국철도유통이 철도공사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이들 승무원의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의 상고심부터 코레일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건드리지 않고 인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놓고 상고이유를 제시했다. 법률심이 원칙인 상고사건의 성공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코레일 소속 열차탑장 업무와 한국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한국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 업무를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바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을 이끈 바른의 정인진 변호사는 “노동 사건에서 대법원 성향을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로, 법리론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유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실관계 간 차별화에 주력했다”며 “유사사건에서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 출자 여부, 경영권 행사 관계, 업무 의존관계, 채용·인사관리 관여 정도 등 15개 항목을 비교 분석한 표를 대법원에 제시하는 동시에 KTX 여승무원의 업무 특성을 지적한 것이 주요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바른 조세팀, 새롭게 조직 갖춰... 조세분야 토털서비스 제공



조현관 고문
T. 02-3479-2466
E. hyunkwan.cho@barunlaw.com



윤영식 고문
T. 02-3479-2468
E. youngsik.yoon@barunlaw.com



이강희 세무사
T. 02-3479-2499
E. kangheelee@barunlaw.com

법무법인(유한) 바른 조세팀이 전문가 영입을 통해 면모를 일신하고 명실상부한 토털서비스에 나섰다 23일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조현관 전 서울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조 고문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조 고문은 행시25회로 서울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과 이현세무법인회장을 지냈다.

그는 국세청 재직시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2과장, 서울국세청 법무2과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3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했다. 이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에는 대구국세청 조사2국장을 역임했다.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리 역임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납세자보호과장 시절 '고액납세의 탭' 제도 도입을 주도했고, 2006년 감사담당관 재직 시절에는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세무사 시험 오류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일조했다.

법무법인 바른 조세팀은 조 고문을 필두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 출신의 윤영식 이현세무법인 부회장을 역시 고문으로 영입했다. 윤 고문은 구미세무서장, 서울청 조사국, 중부청 조사국 등 국세청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이다.

또 일선 세무서에서 20년이상 실무를 경험한 심재복, 이강희 세무사 등을 영입해 조세팀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바른 조세팀은 법원과 로펌에서 조세행정 업무경험을 쌓아온 변호사, 조세실무에서 조세행정최고책임자를 역임한 조세전문가로 맨파워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리빌딩을 완성했다.

바른 조세팀은 그간의 포괄적인 조세 관련 업무경험에 경쟁력 있는 맨파워를 더해 서비스의 질을 강화함으로써 복잡다단해져 가는 조세분야에서 고객만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세청 행정심판에서부터 조세심판원 및 법원 소송을 망라하는 조세분쟁 전 과정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신청, 행정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 자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프리랜서... 퇴직금 안줘도 돼



문기주 변호사
T. 02-3479-2451
E. kijoo.moon@barunlaw.com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만큼 벌어가는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현재 백화점 판매직은 이런 식의 위탁판매가 일반화돼 있어서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백화점 판매원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업체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총 2억7,000여만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같은 법원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도 백화점 판매원 21명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2건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특정 직원들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직원이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근무장소·시간·태도 등을 관리받는 등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 고법 재판부는 B사와 위탁판매원 사이엔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탁판매원들이 사실상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김씨 등은 백화점에 입점해 넥타이, 가방 등을 파는 A사 소속 정규직 직원이었으나 2005년 8월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위탁판매원으로 전환했다. 위탁판매원이 된 이후로는 이전과는 달리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았고 대신 자신들의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갔다. 판매원들은 세금도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냈다. 승진 등 인사명령도 따로 없었다. 매니저, 시니어, 사원 등 직급이 분류돼 있긴 했지만 이는 판매원들이 입사경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붙인 호칭이었다. 출퇴근 등 근무태도 현황도 따로 관리받지 않았다.

1심은 A사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줬는데 이는 사실상 고정급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준 건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개인 매출만큼 벌어가는 급여 제도'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가 판매원의 근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업무 수행 방식, 휴가 사용 등을 판매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원들이 위탁판매로의 전환이 소득 증대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정규직 사직서를 낸 후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탁판매원으로서의 전환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그에 따른 불이익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2심부터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문기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특히 현재 백화점은 B사와 같은 위탁판매가 일반화돼 있어서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판업무 세분화로 송무 실력 키워야 ... 해외로펌 와도 승산




정인진 변호사
T. 02-3479-7555
E. kaydad@barunlaw.com

법무법인 바른은 명실상부한 '전관(前官) 로펌'이다. 파트너 변호사 92명 중 66명이 판사·검사 출신이다. 법조계 안팎의 '전관예우' 비판에 대해 정인진(62) 총괄대표 변호사는 "우리 로펌에 전관은 있지만 예우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예우를 무기로 법률서비스를 하는 전관은 없다"고 단언했다.

정 대표는 물론 서울고법 원장을 지낸 김동건 명예대표도 구속적부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긴다. 공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했던 정 대표는 "공군 장성들도 실전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전투기를 탄다"며 "변호사도 법정을 등지면 감(感)을 잃어 의뢰인을 제대로 도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시장 개방, 형사사건 성공보수 폐지, 저가수입 경쟁 등 법률시장의 위기에 맞서는 바른의 무기는 역시 '송무(재판 업무) 경쟁력'이다. 정 대표는 "로펌의 기본은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 소송 기술이 집약된 송무"라며 "송무 영역의 세분화, 재조 출신의 추가 영입, 내부 학습을 통한 전문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숫자로 본 바른	1998년(설립연도)
변호사 수(2015년 10월 기준)	179명
조세수사, 가사상속 등 운영 중인 전문팀 수	23개
파트너 변호사 중 재조 출신(전관) 비율	72%
판검사로 이직한 변호사 수	7명

소비자들을 대리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기존 의뢰인의 이익과 상충될 게 없는데도 변호사가 경제적 이익을 따져 의뢰인을 고르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현대차 법무실장 출신인 하중선 변호사 주도로 자동차 급발진 문제 등을 연구해 오던 차에 의뢰인들이 찾아와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정부 측 대리를 많이 했다.

"2012년 총괄대표가 된 뒤에 가장 먼저 극복하고 싶었던 게 'MB 로펌'이란 이미지다. 부당한 평가다. 민노당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검사의 해임무효확인소송도 우리가 했다. 선거소송에서 야당 인사들을 대리해 승소한 것도 많았다.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의뢰인을 가리는 것 역시 바른이 추구하는 길은 아니다."



덤핑 수입 등 수입질서 악화가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문뿐만 아니라 소송 수입에도 입찰이 일반화되면서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덤핑이 이뤄진다는 것은 기업 송무시장에서 독과점이 깨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찌면 그동안 로펌들이 너무 고액의 수입료나 자문료를 받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될 거라고 믿는다.”

시장의 힘이라면.

“기업들도 수입료나 자문료를 지나치게 낮춰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건을 로펌에 맡길 때 질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해 선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내 변호사들의 역량과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

신성장동력으로 보는 분야는.

“최근 입법지원팀·방위산업팀 등을 발족해 영역을 넓히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송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를 기르는 게 우선이다. 차별적 송무 경쟁력을 토대로 자문 분야를 키워나갈 생각이다.”

전관과 서비스 마인드는 조금 어색하다.

“‘의뢰인은 언제나 옳다. 의뢰인은 왕이고 은인이다’는 마인드 세팅을 구성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시스템적으로는 의뢰인의 불만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내부 기구를 만들기 위해 연구 중이다. 미국 대형 병원들엔 환자 측의 불만을 접수해 병원 측과 싸우는 내부 조직들이 있다.”

자문 분야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이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박인호 변호사는 15년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리·자문을 맡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바뀌면 사장과 자문 변호사가 바뀌는 풍토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헌신성과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토대로 고객과 상호 충성도 높은 관계를 이어가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관 비중이 높는데 인적 자원의 다양성에 문제는 없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화가 필수적이다. 바른은 필기시험으로 신입 변호사를 선발한다. ‘바른 고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한다. 그 결과 지방대 로스쿨과 서울의 소규모 로스쿨 출신들이 고르게 들어왔다. 사내 변호사 출신 파트너들도 영입하고 있다. 우리끼리 우스개로 ‘사내 전관’이라고 하는데 서로 배울 점이 많다. 바른 출신이 경력 판사·검사로 임용되거나 사내 변호사로 가는 걸 권장하고 돌아오는 것도 환영한다. 법조 직역 간 유동성이 커져야 법률시장의 상생 발전이 가능하다.”

불교 신자인 정 대표의 명함에는 ‘무상무주(無相無住)’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정 대표는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탐진치(貪嗔痴, 욕심·노여움·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존경하는 인물로는 고(故) 정귀호 전 대법관(2011년 작고)을 꼽았다. 정 대표는 “법복을 입었을 때나 벗었을 때나 한결같았던 분”이라고 했다.

법원 “유언대용신탁, 부모가 치매 걸려도 해지 못해” 유언대용신탁 첫 판결



김상훈 변호사
T. 02-3479-7895
E. sanghoon@barunlaw.com

**“은행과 맺은 재산 신탁계약 생전 변경 가능한 유언과 달리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못 바꿔”
‘상속 때 유언 대안으로 주목’**

유언대용신탁은 내용이 바뀌거나 무효가 되기 쉬운 유언과 달리 재산을 남기는 사람(피상속인)이 치매에 걸리거나 마음이 바뀌어도 애초에 맺은 계약 내용이 보호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 법원의 판결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언대용신탁의 안전성을 두텁게 보호한 판결이어서 유언의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주현)는 전모씨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달라”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슬하에 딸을 넷 둔 노인 전씨는 지난해 8월 하나은행에 14억원의 재산을 맡기는 내용의 유언대용신탁을 들었다. 재산을 은행이 관리하되 전씨가 살아 있을 때는 이 재산에서 병원비 요양비 등을 지출하고 사망한 뒤에는 네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조건이었다. 전씨가 치매 증상이 있어 “사후수익자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도 넣었다. 신탁계약을 맺은 지 5개월 뒤인 지난 1월 전씨는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씨는 넷째 딸 송모씨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 송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재판에서 “송씨가 어머니 전씨를 회유해 소송을 낸 것이고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는 송씨”라며 “송씨가 전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무효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증권 부사장을 지낸 A씨와 상공부 차관을 지낸 B씨도 이들 가족의 일원이다. 송씨는 “다른 가족들이 탐내는 어머니의 재산을 원래대로 어머니 앞으로 돌려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이 신탁계약은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은 민법을 거쳐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며 “이 사건 신탁계약이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치매로 의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신탁계약을 맺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계약 전에 이뤄진 인지기능검사 및 면담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전씨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을 대리한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당사자가 계약을 맺을 당시 정한 계약 해지 요건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유언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남기는 데 한계가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융통성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로펌의 이응교 변호사는 “유언의 기능을 갖지만 법적으로는 신탁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의사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비슷한 소송에서 선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아그라 vs. 팔팔정 상표권 소송



박일환 변호사
T. 02-3479-2620
E. ilhoan.park@barunlaw.com

‘마름모꼴에 푸른색’ 모양·색채 비슷하지만 의사처방 받는 전문약.. 디자인 침해 아냐

국내 제약사 한미약품은 2012년 5월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뒤 마름모꼴 형상에 푸른빛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정’을 출시했다.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다. 같은해 10월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와 화이자 한국 법인이 “비아그라의 디자인권이 침해당했다”며 팔팔정의 판매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도 전량 폐기하라며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낸 것.

판결은 엇치락뒤치락 했다. 1심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이 통상의 약 모양과 색채의 결합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화이자 측은 마름모꼴 형상에 푸른색 색채를 입힌 비아그라의 표장 등록을 마쳤다는

것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입체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했다.

입체상표란 문자나 로고, 그림 등으로 구성된 일반적 상표와 달리 입체적 형상만으로 상품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말한다. 다른 음료수 병과 구별되는 잘룩한 허리 모양과 웨이브 문양을 가진 코카콜라 병이 대표적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화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는 “팔팔정이 비아그라를 모방해 그 식별력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팔팔정의 생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항소심 직후 한미약품은 법무법인 바른을 포함해 로펌 두 곳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미약품을 대리한 바른의 박일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비아그라의 도형상표에서 도형자체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문약품의 구매과정에서의 식별력 인정범위 △두 개의 약 모양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상대측의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을 펼쳤다.

이후 지난 10월 대법원은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한 형태는 일반적인 알약의 형태로서 식별력이 없고 비아그라와 팔팔정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며 화이자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의약품의 포장과 제품에 이름과 상호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병원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의 의해 투약되는 전문약품 특성상 오인, 혼동의 우려도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3년 넘게 벌인 지리한 법정공방을 펼친 한미약품은 대법원 판결로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박 변호사는 “입체상표에 관한 선도적 판례로 입체상표로서의 유효성을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으로는 인정하면서 알약의 디자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그 범위는 제한적으로 좁게 인정해 권리자(화이자)와 제3자(한미약품)의 권리를 조화롭게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과연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 약의 디자인 때문인지 도형 상표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고 디자인의 사용을 상표적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은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치과 의사의 얼굴 미용 시술 합법인가 불법인가



김도형 변호사

T. 02-3479-5735
E. kdhwino0@barunlaw.com

연간 2500억 규모의 시장 확보 싸고 치과협회·의사협회 격돌

치과 의사가 환자의 '안면(顔面, 얼굴)' 부위에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나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하는 것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이 같은 사건을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의료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안면미용 시장 확보의 사활이 걸린 이 사건에서 의협은 범무법인 바른을, 치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내세워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환자의 얼굴에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 의사 이모(48)씨 사건(2013도7796)과 보톡스를 이용해 주름 치료를 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정모(47)씨 사건(2013도850)을 현재 심리 중이다. 두 사건은 치과 의사가 환자의 안면 부에 피부미용 시술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는 거의 동일하지만 원심의 판단은 달랐다.

치과 의사의 진료 영역인 '구강악안면(口腔顎顔面)' 외과에 구강과 턱 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치과에서 다루는 구강악안면에는 구강과 턱을 포함해 안면부 전체가 포함된다"며 "치과 의사의 교과서에도 모발이식이나 레이저 성형술, 필러·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정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란 치아와 그 주위 조직 등 악안면 부분에 한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다만 형(刑)은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하게 판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쟁점인 '구강악안면'의 범위는 물론 △의료법이 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 의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레이저 시술이나 보톡스 시술에 있어 일반 의사가 치과 의사보다 더 깊은 전문성을 지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 상임이사회를 열고 두 치과 의사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구강악안면은 전체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과 턱 주위만을 의미할 뿐이며 학문적 원리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의 교과서에는 피부 레이저 시술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고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도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레이저 시술은 고유 파장을 고르게 쏘는 기술로 종류가 다양해 피부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필요하며 시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 반드시 일반 의사가 진료해야 한다. 치과의는 인체 전반에 대한 지식과 진료 경험이 없어 응급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응급 치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안면 피부 미용 시술이나 보톡스 시술은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술인데 의사 단체간 갈등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빨리 나와 논란이 조속히 매듭지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